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6 선고 2020가단5115470 판결 [매매대금지급채무존재확인 청구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

담당변호사 김솔하, 김필성

피고 1. 주식회사 D

2. E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11. 6.

주 문

1.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4. 선고 2010가합58464 매매대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김지영

별지